

# PRUGIO

Treciel



분양 안내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PRUGIO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23-1 일원(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1블록)

**공급규모**

지하 2층 ~ 지상 28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960세대(공공분양 768세대, 행복주택144세대, 공공임대 48세대) 중 공공분양 주택 지구주민 우선공급을 제외한 **5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86세대, 특별공급 475세대)**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자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등	기관 추천			
공공분양 주택	2023-000603	1	059.9300A	59A	59.9300	22.8694	82.7994	9.8160	35.7633	128.3787	35.4132	225	23	67	56	11	11	23	34	9	2027년9월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2	059.9700B	59B	59.9700	24.6601	84.6301	9.8227	35.7872	130.2400	36.1156	47	5	14	12	2	2	4	8	2	
		3	67.9600	67	67.9600	25.3752	93.3352	11.1313	40.5552	145.0217	39.9447	95	9	29	24	5	5	9	14	4	
		4	074.9700A	74A	74.9700	27.3272	102.2972	12.2795	44.7385	159.3152	43.8347	147	14	44	37	7	7	15	23	11	
		5	074.6300B	74B	74.6300	27.7859	102.4159	12.2238	44.5356	159.1753	43.8105	47	5	14	12	2	2	5	7	3	
합계											561	56	168	141	27	27	56	86	29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잔금 30%			
							중도금 10%	입주 시 (주택도시자금 제외금액)	주택도시자금							
							계약 시	2024.7.25	2025.1.24	2025.7.25	2026.1.23	2026.7.24			2027.1.22	
059.9300A	59A	102동 (1호,2호,3호,4호) 103동 (1호,2호,3호,4호) 108동 (3호)	1층	8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51,800,000	55,000,000	
			2층	8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54,200,000	55,000,000
			3~4층	18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56,600,000	55,000,000
			5~9층	43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59,300,000	55,000,000
			10~19층	79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61,700,000	55,000,000
			20층이상	69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64,700,000	55,000,000
059.9700B	59B	108동 (1호,2호)	1층	2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48,800,000	55,000,000	
			2층	2	354,0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51,200,000	55,000,000
			3~4층	4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53,300,000	55,000,000
			5~9층	1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56,000,000	55,000,000
			10~19층	19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58,400,000	55,000,000
			20층이상	10	387,0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61,100,000	55,000,000
67.9600	67	104동 (1호,2호,3호,4호)	1층	4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42,600,000	75,000,000	
			2층	4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5,000,000	75,000,000
			3~4층	8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7,700,000	75,000,000
			5~9층	20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50,700,000	75,000,000
			10~19층	36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53,400,000	75,000,000
			20층이상	23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56,700,000	75,000,000
074.9700A	74A	105동 (2호,3호,4호)	1층	3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57,600,000	75,000,000	
			2층	3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60,600,000	75,000,000	
			3~4층	6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63,300,000	75,000,000	
			5~9층	14	473,0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66,900,000	75,000,000	
			10~19층	7	483,0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69,900,000	75,000,000	
		20층이상	5	495,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73,500,000	75,000,000		
		106동 (2호,3호,4호) 107동 (2호,3호,4호) 108동 (4호,5호)	1층	6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53,700,000	75,000,000
			2층	6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56,400,000	75,000,000
			3~4층	16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59,400,000	75,000,000
			5~9층	4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62,700,000	75,000,000
			10~19층	20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65,700,000	75,000,000
20층이상	21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69,300,000	75,000,000		

※ 상기 안내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내용과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잔금 30%			
							중도금 10%	입주 시 (주택도시자금 제외금액)	주택도시자금							
							계약 시	2024.7.25	2025.1.24	2025.7.25	2026.1.23	2026.7.24			2027.1.22	
074.6300B	74B	105동 (1호)	1층	1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56,400,000	75,000,000	
			2층	1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59,400,000	75,000,000
			3~4층	2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62,100,000	75,000,000
			5~9층	5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65,700,000	75,000,000
			10~19층	3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68,700,000	75,000,000
		106동 (1호) 107동 (1호)	20층이상	2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72,300,000	75,000,000
			1층	2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52,500,000	75,000,000
			2층	2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55,500,000	75,000,000
			3~4층	4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58,200,000	75,000,000
			5~9층	10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61,500,000	75,000,000
			10~19층	9	465,0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64,500,000	75,000,000
			20층이상	6	476,0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67,800,000	75,000,000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서명 날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외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속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사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확인 가능 자료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 · 낙찰 증명서류 : 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 경 ·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ex)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정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 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및 (예비)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및 배우자	· 태아 또는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상기 안내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내용과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예비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혼인 유무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년내도 서류
일반 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한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날인)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신청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확인 가능 자료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 · 낙찰 증명서류 : 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 경 ·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ex)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근무자 (단신부 임)	○		해외체류 증명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파견,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지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 청약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등본에 분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주자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제3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위임용/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명기)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자료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 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정보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안내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내용과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계약일정안내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특별공급)	2024.1.2(화) ~ 2024.1.6(토) (5일간) (10:00~16:00)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

※ 사회보장정보원 소득확인 등의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지연 시 상기 표의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금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날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세액(인지세)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1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추가서류 (본인 이외)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해당자	•건본주택 비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위임용/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입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명기)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무통장 입금 시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1동 702호 계약자 → '1010702홍길동')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상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지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함.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일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실행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추진 등따라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Mock-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북카페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거한 입주인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정)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번호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정,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변경(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역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민간사업자 : (주)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주), 금호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우암건설(주) / 시공업체 : (주)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주), 금호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우암건설(주) / 분양주체 : (주)대우건설 ]입니다.



67m<sup>2</sup>  
95세대

주거전용면적 67.960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25.3752m<sup>2</sup> | 공급면적 93.3352m<sup>2</sup> | 기타공용면적 51.6865m<sup>2</sup> | 계약면적 145.0217m<sup>2</sup>



확장기본형



확장옵션형



라이프업 스타일링

- 1 현관 중문
- 2 거실 아트월
- 3 거실/주방 바닥재
- 4 주방 마감 특화

라이프업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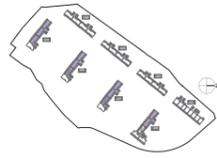
- 5 현관 창고/팬트리 수납특화
- 7 침실2 불박이장
- 6-1 침실1 드레스룸 특화(폴대형 시스템선반+천정형 제습기)
- 6-2 침실2 드레스룸 특화(벽판넬 시스템선반+경판넬+천정형 제습기)

라이프업 키친

- 8-1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 8-2 오브제 컬렉션 (미스트베이지) 김치/냉동/냉장 패키지+상부장+키 큰장

74m<sup>2</sup>A  
147세대

주거전용면적 74.970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27.3272m<sup>2</sup> | 공급면적 102.2972m<sup>2</sup> | 기타공용면적 57.0180m<sup>2</sup> | 계약면적 159.3152m<sup>2</sup>



확장기본형



확장옵션형



라이프업 스타일링

- 1 현관 중문
- 2 거실 아트월
- 3 거실/주방 바닥재
- 4 주방 마감 특화

라이프업 수납

- 5 현관 창고/팬트리 수납특화
- 6-1 침실1 드레스룸 특화(폴대형 시스템선반+천정형 제습기)
- 6-2 침실2 드레스룸 특화(벽판넬 시스템선반+경판넬+천정형 제습기)
- 7 침실1 폴딩도어 불박이장
- 8 침실2 불박이장

라이프업 키친

- 9-1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 9-2 오브제 컬렉션 (미스트베이지) 김치/냉동/냉장 패키지+상부장+키 큰장

74m<sup>2</sup>B  
47세대

주거전용면적 74.6300m<sup>2</sup> | 주거공용면적 27.7859m<sup>2</sup> | 공급면적 102.4159m<sup>2</sup> | 기타공용면적 56.7594m<sup>2</sup> | 계약면적 159.1753m<sup>2</sup>



확장기본형



확장옵션형



라이프업 스타일링

- 1 현관 중문
- 2 거실/복도 아트월
- 3 거실/주방 바닥재
- 4 주방 마감 특화

라이프업 수납

- 5 팬트리 수납특화
- 6-1 침실1 드레스룸 특화(폴대형 시스템선반+천정형 제습기)
- 6-2 침실2 드레스룸 특화(벽판넬 시스템선반+천정형 제습기)
- 7 침실1 폴딩도어 불박이장
- 8 침실2 드레스룸
- 9 침실3 불박이장

라이프업 키친

- 10-1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 10-2 오브제 컬렉션 (미스트베이지) 김치/냉동/냉장 패키지+상부장+키 큰장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6	7	8	9	10 입주자 모집공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특별공급	21 1순위	22 2순위	23	24	25
26	27	28 당첨자 발표	29	30	12/1	2
3	4	5	6	7	8	9
				←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		
10	11	12	13	14	15	16
				←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		
17	18	19	20	21	22	23
→ 사회보장정보원 소득확인 및 부적격 의심자 소명기간						
24	25	26	27	28	29	30
→ 사회보장정보원 소득확인 및 부적격 의심자 소명기간						
12/31	1/1	2	3	4	5	6
		← 공급계약 체결 →				
7	8	9	10	11	12	13

\* 일정표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헌 푸르지오 트레시엘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총 960세대

공공분양 561세대(일반공급 86세대 및 특별공급 475세대)  
행복주택 144세대(전용 39㎡ / 44㎡) 공공임대 48세대(전용 51㎡)

# 1551-3040

시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 D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주) 금호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우암건설(주)

\*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과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중 공급세대수 중 지구주원 우선공급 대상자의 계약체제를 제외한 세대수를 (일반)공공분양 대상 세대수로 지정합니다.